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	-----

신청인 (양도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거주 주택 (양도 주택)	④ 소 재 지			
	⑤ 주택 면적(㎡)	⑥ 토지 면적(㎡)	⑦ 취득일	⑧ 양도일
	⑨ 거주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⑩ 양도가액	

- ⑪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등이 임대기간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내역
⑫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등이 임대기간요건 등을 미충족한 경우 내역

구 분	소유자			장기임대주택 등 내역									
	성명 (13)	양도 자와 의 관계 (14)	주민 등록 번호 (15)	소 재 지 (16)	취 득 일 (17)	주 택 면적 (18)	토 지 면적 (19)	임대 개 시 일 (20)	임대 단 기 시 간 (21)	세법상 사업자등록		시군구청 임대등록	
										등록일 (22)	등록호수 (23)	등록일 (24)	등록호수 (25)
장기임대 주택(26)													
장기 어린이집 (27)													

임대내역(28)													
구 분	임차인			임대료		임대기간							
	성명	생년월일		보증금	월세	개시일	종료일	기간					
최초 임대													
2회 임대													
직전거주 주택보유명세 (29)	소재지						양도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4항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인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	-------	------------

신고인 제출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사본 1부 ※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은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내역 제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사본 1부 4.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사본 1부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거주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및 토지·건축물대장 3. 장기임대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증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⑨란: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 양도자의 거주기간을 적습니다.
- ⑩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 ⑪란: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의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한 경우 [V] 합니다.
- ⑫란: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의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V] 합니다.
- ⑬란, ⑭란, ⑮란: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명 및 양도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⑯란: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임대를 개시한 날, 장기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어린이집으로 사용을 시작한 날을 적습니다.
- ⑰란: 임대 개시일의 기준시가를 적으며 2011.10.14.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인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습니다. 장기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어린이집으로 사용을 시작한 날의 기준시가를 적습니다.
- ⑱란, ⑲란: 임대주택인 경우 사업자등록일과 사업자등록 시 임대 등록된 호수를 적습니다.
- ⑳란, ㉑란: 임대주택인 경우 시군구청 임대등록일과 임대 등록된 호수를 적습니다.
- ㉒란, ㉓란: 거주주택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는 ㉒란에 소재지 등을 적고, 장기어린이집인 경우에는 ㉓란에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 ㉔란: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까지 임대한 내역을 적습니다.
- ㉕란: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